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89
------	------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3. 7. 27. ~ 2023. 8. 16.)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년도내”를 “회계연도 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생략)</p> <p>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조(일시차입)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u>회계년도</u>내에 상환하여야 한다.</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2028년 12월 31일</u>-----.</p> <p>-----</p> <p>-----</p> <p>-----</p> <p>-----.</p> <p>제5조(일시차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회계연도</u> 내에 -----.</p>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전세리
연 락 처	2627 - 1734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2. 4. 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8호, 2022. 4. 2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2018.8.1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8.13.>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8.13.] <신설 2018.8.13.>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9.11.15, 2018.8.1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관리금<개정 2018.8.13.>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개정 2018.8.13.>
3.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8.8.13.>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8.8.13.>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8.8.13.>
9. 삭제 <1999.11.15>
10. 삭제 <1999.11.15>
11. 그 밖에 잡수입<개정 2018.8.13.>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9.11.15, 2018.8.13>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4.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거주(상근)자 우선주차제 단속에 따른 비용<개정 2001.06.30>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개정 2018.8.13.>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존 건축물의 대문,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시설비의 일부보조<신설 1999.11.15, 2018.8.13>
8. 주차장 사용료 및 견인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전자지급 수수료 비용 ,<신설 2001.06.30><개정 2022.4.20.>
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신설 2002.05.23>
10.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신설 2006.10.13>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8.13.>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8.1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4호, 1995.03.0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 및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호,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7호의 규정은 1999년 8월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23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 2002.05.23)(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

부칙 (제472호, 200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8호, 2022.4.20.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11, 3814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